

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

의안
번호

429

제출연월일 : 2006년 6월 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화재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날로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소방파출소 신설과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개선,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
 - 충주소방서의 이전 신축과,
 - 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를 신축하며
-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벤처기업 활성화 및 유비쿼터스 BIT기반 연구개발 거점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
 - 오창벤처프라자 부지와
 - U-플랫폼운영센터 신축 예정부지를 우리 도의 출연법인인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에 매각하고자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재산의 취득

《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 》

- 위치 : 충주시 목행동 489
- 사업규모
 - 토지매입 : 1필지 13,350㎡
 - 건물신축 : 1/3층 3,960㎡(철근콘크리트 스투브)
- 사업기간 : 2006. 6 ~ 2007. 12
- 사업비 : 6,600백만원(도비)

《 청주소방서 부용파출소 신축 》

- 위 치 :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96-1
- 사업규모
 - 토지매입 : 1필지 2,812㎡
 - 건물신축 : 2층 825㎡(철근콘크리트 스투브)
- 사업기간 : 2006. 6 ~ 2007. 12
- 사 업 비 : 1,875백만원(도비)

□ 재산의 처분

《 오창벤처프라자 및 U-플랫폼운영센터 부지매각 》

- 위 치 :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1-1번지 등 2필지
- 매각면적 : 9,920.9㎡
 - 오창벤처프라자 부지 6,614.9㎡
 - U-플랫폼운영센터 부지 3,306.0㎡
- 매각시기 : 2006. 10 ~ 12
- 재산가액 : 2,189,216천원
- 매 수 자 :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

3. 예산상황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재산취득	재산처분	교환취득	교환처분
계	8,475,000	2,189,216	-	-
○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	6,600,000			
○ 청주소방서 부용파출소 신축	1,875,000			
○ 오창벤처프라자 및 U-플랫폼운영센터 부지매각		2,189,216		

4.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 : 별첨

5. 관계법령 : 별첨

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
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

□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(단위 : m²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 (천원)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,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2 건	16,162.00	2,800,000				
	건물	2 건	4,785.00	5,675,000				
	기타							
1	토지	충주시 목행동 489	13,350.00	1,800,000	2006 ~ 2007	충주 소방서 이전 신축부지	매 입 (학교법인 건국대학교)	
	건물	"	3,960.00	4,800,000	"	충주 소방서 이전	신 축	
	기타							
2	토지	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96-1	2,812.00	1,000,000	2006 ~ 2007	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 신축부지	매 입 (국 가)	
	건물	"	825.00	875,000	"	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 신축	신 축	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□ 2006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(7-1)

(단위 : m²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 (천원)	매 각 시 기	매 각 사유	매 수 자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1 건	9,920.90	2,189,216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1	토지	계 2필지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1-1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3-6	9,920.90 6,614.90 3,306.00	2,189,216 1,459,691 729,525	2006	벤처기업활성화 등 유비쿼터스 BIT기반 연구 거점단지육성	(재)충청북도 지식산업진 흥원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2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관 계 법 령 발 취

[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]
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	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
<p>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.</p> <p>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①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</p> <p>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기부채납,무상양수,환지,무상귀속,교환,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출자,그 밖의 취득)을 말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양여,교환,무상귀속,건물의 멸실,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</p> <p>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),처분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)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)로 하고,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.</p> <p>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)</p>

【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】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 2 ~ 5호 생략